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제정 2004. 1.31 개정 2008. 5. 9 개정 2013. 9.13
개정 2006. 3.25 개정 2012. 1. 1 개정 2014. 1. 1
개정 2006. 4.11 개정 2012. 3. 1 개정 2016. 3. 7
개정 2006. 5. 3 개정 2013. 4.22 개정 2016. 4.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 하며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창의력 있는 인력을 양성 하고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산학협력 및 연구 계획수립, 제도개선, 대내외 협력 및 홍보 (개정: 2008.5.9)
2. 산학협력 및 연구 계약체결 및 이행 (개정: 2008.5.9)
3. 산학협력 및 연구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개정: 2008.5.9)
4.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학교기업,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지원 업무 (개정: 2008.5.9)
7. 교내 및 교외 연구비 관리 업무 (개정: 2008.5.9)
8. 그밖에 산학협력 및 연구에 필요한 사항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8.5.9)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삭제: 2013.9.13)

제 2 장 위원회

제6조(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되며, 하부에 연구산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3.1)

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기획처장, 행정처장, 연구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포항공과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5.9)
4. (삭제: 2006.5.3)
5. (삭제: 2006.5.3)
6. (삭제: 2008.5.9)
7. (삭제: 2008.5.9)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9.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3)

제8조 (삭제: 2012.3.1)

제9조(연구산학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개정: 2012.3.1)

② 위원은 포항공과대학교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8.5.9)

③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8.5.9)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1)

1. 산학협력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 및 연구사업 신청·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3. 장·단기 연구계획의 수립 및 연구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연구과제의 승인, 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 수행 및 결과의 평가,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외연구비, 간접연구경비, 학술관련연구기금 및 산학관련연구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부설연구소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자체연구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연구업무 및 산학협력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10.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1. 학교기업, 산학협력지주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8.5.9)

제10조(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5.9)

제3 장 조 직

제11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3.9.13)

④ 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⑤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5.9)

제12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연구처와 산학처를 두며, 연구처에는 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지원센터를 산학처에는 산학협력팀, 기술사업화팀을 둔다. (개정: 2012.1.1.)(개정: 2013.4.22.)(개정: 2016.3.7.)

② 산학협력단에는 제1항의 하부조직 외에 필요에 따라 산학협력사업 추진 및 연구운영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따로 둘 수 있으며, 해당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업무규정에서 정한다(신설: 2016.4.27.)

③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직원 및 연구원 등을 산학협력단에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력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9.13)

제13조(임면) ①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연구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 구성인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 산 및 회 계

제14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15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6조(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7조의 재원으로 한다.

제17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과 제2항의 출연금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② 포항공과대학교 설립·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호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제19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회계기관) ① 단장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다만, 포항공과대학교 총장과 협의하여 포항공과대학교 회계담당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을 산학협력단에 둘 경우에는 단장이 수입원 및 지출원을 임명한다. 다만,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에 의할 수 있다.

제22조(회계처리 등) 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제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는 정부가 정하여 고시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예·결산) ①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여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② 단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결산심의기구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제24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 ①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소관부서의 협조를 얻어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및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제 5 장 보 칙

제27조(비밀유지의무)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13)

제29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법원에 해산등기 신청을 한다.

②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포항공과대학교에 귀속한다.

제3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보상금의 지급)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하거나 학교기업 수익발생에 기여한 자에게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공고)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포항공과대학교 신문으로 한다.

제33조(준용)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13.9.13)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포항공과대학교와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4월 1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5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9월 13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2조 제1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201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